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근거 마련에 따른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절차·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함. 또한 유조선으로 건조된 시운전선박의 방제분담금 부담 합리화를 위한 부과기준 완화 병행추진

3. 주요내용

가. 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해양오염에 취약한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 중 계선 이후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거나, 선체손상 등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경우로 규정 (안 제89조제6항 신설)

- 1) 상대적으로 오염우려가 적고, 소유주 대부분이 생계형 어업인 또는 영세사업자인 소형선박(20톤 미만 기선 및 범선)은 대상에서 제외
- 2) 침몰 등의 사고 발생시 유류 배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유조선의 경우에는 톤수의 제한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

나. 해양오염 피해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1) 지원내용 및 절차 등은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공고
 - 2) 필요한 경우, 대상 사업 선정 시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
- 다.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에 신규 건조된 유조선을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유조선 외의 선박 요율이 적용됨을 단서 조항으로 신설 (안 시행령별표9)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5. 3. 6. ~ 3. 12.) 예정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15조제4항에서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유조선 또는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선박
2. 선체손상 등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선박

제9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별표 9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선박: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국내 조선

소에서 신규 건조된 유조선을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유조선 외의 선박 중 내항선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방제분담금은 별표 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9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89조(출입검사·보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15조제4항에서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유조선 또는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은 선박 2. 선체손상 등 해양오염 우려가 외관상 현저한 선박
제91조(국고보조 등) (생략) <u><신설></u>	제91조(국고보조 등)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u><신설></u>	

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285